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욕구분석

Needs for the Conversion of Social Enterprise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Jae Lee(123peter@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욕구를 파악해 올바른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극복되어야 할 내부 장애요인으로는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의 부족이 지적되었고, 사회적 기업 전환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재정지원이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정에는 기업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지원은 인건비 지원, 우선 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였다.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 수 있도록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로개척을 지원해야한다.

■ 중심어 : | 사회적 기업 | 욕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roper support policy for the social enterprises by investigating the agency's needs of aiming social enterprise.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nter obstacle factors are the lack of operating and investment funds, and preceding condition for social enterprise's conversion is most important is finance support. The preparation of social enterprise's establishment and operating fund is needed in the conversion's process for social enterprise, and the important issues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solve are the support of labor cost and the obligation of trusts and purchases. Therefor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support initially funds for having facilities and staffs in social enterprises, and support forming market for the goods and services of social enterprises

■ keyword : | Social Enterprise | Need |

I. 논의배경과 목적

사회적 기업은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제3섹터의 하

나이다. 이탈리아가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벨기에(1995), 포르투갈(1998), 스페인(1999), 그리스(1999), 프랑스(2001) 등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혹은 기존법의 개정을 통하

* 이 논문은 2009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9-0142).

접수번호 : #091125-006

접수일자 : 2009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1월 06일

교신저자 : 이용재 e-mail : 123peter@hanmail.net

여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영국, 프랑스에서 확산되었다. 영국은 2002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사회적 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이 결성되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2][3].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7월에 시행되면서, 국가주도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노력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9년 10월말 현재 250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 공급의 확대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꽤 많은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꾀하게 되었다. 실제로 확산화가 사회적 기업의 2006년 대비 2007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중 매출액 비중이 66%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2배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으며, 전체 일자리수가 54%증가하고 사회서비스를 수혜하는 취약계층 수가 41%증가하는 등 사회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국내외적인 사회적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육성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전환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회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전환과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정책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사회적 기업 개념과 인증요건, 지원내용

1. 개념과 특성, 인증요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케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발견하는 것은 쉽

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경영전략으로 조직된, 공익 지향적인 비특정 민간활동(any private activity)으로서,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특정 경제, 사회적 목표 실현이며,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와 관련된 혁신적 해결방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9]. 즉, 사회적 기업 자체보다는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활동추구의 목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성격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심창학은 OECD, Th. Jeantet¹, C. Borzaga and A. Santuar², J. L. Laville³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정의의 통해서 활동의 주체, 목적 등에 있어서 편차가 있으며,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참여인 혹은 재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경향도 발견되는 등 사회적 기업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가 힘들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과 사회적 목표 성취가 주요 목적중의 하나라는 점, 구성원의 다양성과 경영에의 적극적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2][5][9][10].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EMES(유럽의 사회적 기업 전문가 네트워크)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일한 개념규정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지니는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EMES는 사회적 기업의 특징으로, 첫째, 경제적, 기업 경영적 측면의 특성으로는 지속적인 제품생산과 서비스 판매활동, 높은 수준의 자율성,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일정비율 이상의 유급 근로의 특징을 가진다. 둘째, 사회적 측면으로는 시민사회(시민그룹)의 주도,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 1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은 목적, 참여인, 재원의 다양성 등의 특징이 합쳐진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경제의 하위영역체로서 기업의 성격에 따라, 예컨대, 공익추구의 성격이 강할 때는 단체영역으로,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강조 될 때에는 협동조합 영역에 가까워지는 역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 2 안정적, 기업 경영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 극복이 목적인 서비스 혹은 좀 더 일반적인 대인,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터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3 지역사회 전체이익 보호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

의사결정권, 활동관련 행위자들의 참여적 성격, 제한적 이윤분배, 지역사회 공헌의 명확한 목표 등이다[3]. Kim Alter는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전통적 기업에서부터 조직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이르기 까지 매우 폭넓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9].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통해 볼 때, 사회적 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에서부터 마케팅을 통한 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목적의 달성에 위한 사회적 기업의 노력을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과의 연계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을 기업의 주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해 공익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의 인종요건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를 포함해 비영리단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때문에 지원 방식도 조직형태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익사업과 거리가 멀었던 비영리단체의 경우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정한 수익을 통해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상 회사에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합리적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 모두 공익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정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법상 회사와 비영리단체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구조적 차이가 있는 만큼, 영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시장 확보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급근로자 고용이다. 기존에 상당수의 유급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당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유급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사업아이템과 성공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성공시키기에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유급근로자 고용 시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보다는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영세 기관이나 시설을 선별하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다. 사회적 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취약계층 수혜자 대표를 포함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는 목적, 사업내용, 소재지,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재산과 회계,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등의 내용을 필수로 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일곱째,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인종요건은 이윤창출이 목적인 상법상회사에 국한된 조항이다.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경영지원, 설비비지원, 우선구매 촉진, 세제지원,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지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

표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경영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종합경영컨설팅 또는 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집중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계프로그램 설치·사용비 지원
설비비 지원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점포임대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임대차 보증금,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 기업가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
세제지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하고,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소득의 5%범위 내에서 전액손금처리가능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지원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들과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 등을 지원
보호된 시장을 제공	사회적 기업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자부, 재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법, 조례,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7가지 정부의 사회적 기업지원의 구성은 대체로 기업으로서의 대내외적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원내용을 3분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이나 회계프로그램의 지원은 해당 기관의 체질개선과 경영안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상황과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이 기존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영세한 시민사회단체 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들로 기업경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 기업에 맞는 경영기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건비와 설비비, 세제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제공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서비스의 양적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2년간의 인건비 지원이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록 사회적 기업이전에 3년간 사회적 일자리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속적으로 근로자

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구적인 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사회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으로 구분해 사회적 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목적에 우선하더라도 점차 지원금액(비율)을 줄여가는 형태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와 보호된 시장의 제공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 공급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고용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와 보호된 시장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선구매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기업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실효성있는 우선구매와 시장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요구된다.

III. 사회적 기업전환을 위한 욕구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사회적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8년 08월 설문지 초안을 만들었으며, 사회적 기업운영자와 실무자, 지역사회복지관과 자활

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자들의 Pretest를 거쳐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지역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이다. 대상기관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로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관 리스트를 확보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2008년 8월말 3465부의 설문지를 각 기관에 발송하였으며, 47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반송된 설문지 80개를 제외한 3395부중 47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13.93%이다. 대상영역별 기관 분포는 장애인 복지 관련기관이 111개 기관 23.5%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복지 99개 기관, 노인복지 81개 기관, 아동복지 50개 기관, 사회복지법인과 모부자복지 각각 39개 기관, 청소년 복지 19개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회적 기업 인증에 관심을 많이 표명해 온 장애인과 노인복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을 통해 파악된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기관 및 시설들의 욕구는 다음과 같다.

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욕구분석

2.1 사회적 기업의 내부 장애요인

사회적 기업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전환과 발전, 성장에 장애가 되는 내부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순위로는 운영자금 및 투자자

금의 부족 107개 기관 38.9%, 전문성을 갖춘 기술과 운영인력 부족 69개 기관 25.1%, 상품판매, 시장개발 등의 마케팅 기술부족 19개 기관 6.9%, 참여자의 근로의욕부족과 근로능력부족이 각각 13개 기관 4.7%등의 순이었다. 2순위로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의 부족 53개 기관 19.3%, 작업시설 및 설비의 부족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운영인력의 부족이 각각 42개 기관 15.3%, 상품판매, 시장개발 등의 마케팅 기술의 부족 30개 기관 10.9%, 사회복지기관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7개 기관 9.9%의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게 운영되었고, 기업과 같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에 문제가 되는 내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2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선행 조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 1순위로는 재정지원이 125개 기관 32.4%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85개 기관 22%, 경영지원 74개 기관 19.2%,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의 완화 63개 기관 16.3% 등 이었다. 2순위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96개 기관 24.8%로 가장 많이 지목되

표 2. 사회적 기업 전환·발전·성장의 내부 장애요인(단위 : 개, %)

구분	1순위		2순위	
	기관수	백분율	기관수	백분율
참여자의 기술수준 부족	10	3.6	9	3.3
참여자의 근로능력 부족	13	4.7	12	4.4
참여자의 근로의욕 부족	13	4.7	13	4.7
전문성을 갖춘 기술/ 운영인력 부족	69	25.1	42	15.3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의 부족	107	38.9	53	19.3
작업시설 및 설비의 부족	11	4.0	42	15.3
상품판매, 시장개발 등의 마케팅 기술의 부족	19	6.9	30	10.9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관리능력의 부족	1	.4	16	5.8
조직 및 참여자 관리기술부족	8	2.9	9	3.3
사회복지기관(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12	4.4	27	9.9
관련 제도 및 법규의 규제에 의한 활동 제약	4	1.5	15	5.5
공무원 지자체 등의 비협조	8	2.9	6	2.2
합계	275	100.0	274	100.0

었고, 경영지원의 강화 92개 기관 23.8%, 시설비 지원 88개 기관 22.7%, 판매처 확보 지원 85개 기관 22%등이었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시설 및 설비비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사회적 기업 전환과정에 필요한 지원

사회적 기업 전환에 장애가 되는 내부요인과 선행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전환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전환과정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사결과 1순위로 기업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 203개 기관 52.5%,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대표 51개 기관 13.2%,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49개 기관 12.7%, 참여자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42개 기관 10.9% 등의 순이었다. 2순위로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109개 기관 28.2%, 사업·경영 컨설팅 82개 기관

21.2%, 참여자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 79개 기관 20.5%, 기업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 70개 기관 18.1% 등이었다. 사회적 기업 전환과정에서도 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판매처와 경영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전환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과 시장을 확보하고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모든 활동은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인건비 지원이 103개 기관 27.6%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85개 기관 22.8%, 생산기술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37개 기관 9.9%, 생산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37개 기관 9.7%, 사회적 기업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조치(조례제정 등) 36개 기관 9.7% 등의 순이었다. 2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도 1순

표 3.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선행조건(단위 : 개, %)

구분	1순위		2순위	
	기관수	백분율	기관수	백분율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의 완화	63	16.3	26	6.7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포함)의 강화	125	32.4	96	24.8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의 강화	85	22.0	88	22.7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의 강화	74	19.2	92	23.8
사회적기업의 판매처 확보 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강화	37	9.6	85	22.0
기타	2	.5	-	-
합계	386	100.0	387	100.0

표 4. 사회적 기업 전환과정에 필요한 지원(단위 : 개, %)

구분	1순위		2순위	
	기관수	백분율	기관수	백분율
기업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	203	52.5	70	18.1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49	12.7	109	28.2
참여자들에 대한한직업/기술교육	42	10.9	79	20.5
사업/경영 컨설팅	41	10.6	82	21.2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진 대표	51	13.2	46	11.9
기타	1	.3	386	100.0
합계	387	100.0	387	100.0

표 5.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단위 : 개, %)

구분	1순위		2순위	
	기관수	백분율	기관수	백분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85	22.8	42	11.2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3	6.2	37	9.9
광고 및 홍보, 영업 등 전문적인 경영지원	26	7.0	33	8.8
생산기술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37	9.9	51	13.6
인건비 지원	103	27.6	56	14.9
사회적기업의 법적위험확보를 위한 조치(관련조례제정 등)	36	9.7	34	9.1
사회적 기업 운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26	7.0	48	12.8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쇼핑몰 구축 등 홍보 및 광고지원	5	1.3	20	5.3
창업 및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확대	27	7.2	38	10.1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확대	4	1.1	15	4.0
기타	1	.3	1	.3
합계	373	100.0	375	100.0

위와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이 51개 기관 14.9%로 가장 많았고, 생산기술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51개 기관 13.6%, 사회적 기업 운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48개 기관 12.8%,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42개 기관 11.2%, 창업 및 사업자금의 융자지원 확대 38개 기관 10.1% 등 이었다.

결국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과 우선 구매·위탁을 통한 안정된 시장 확보, 각종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개선에 대한 지원욕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VI.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고찰과 과제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전환과 발전, 성장에 장애가 되는 내부요인으로는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의 부족, 전문성을 갖춘 기술과 운영인력 부족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둘째,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정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넷째, 정부와 자자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원은

인건비 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등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 수 있도록 초기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상품과 서비스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기업의 증가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사회적 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내용이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은 굳이 복잡한 사회적 기업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보다 인건비 등 재정지원의 폭과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능력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 안정된 시장 확보지원도 문제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등 안정적 시장확보

를 위해 의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현실에 대한 열린 지원(open support system)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시스템이 기업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경영지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 홍보 등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컨설팅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하고, 관리직원 1-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사회적 기업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사회적 기업의 현실과 욕구에 맞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즉, 정해진 지원이 아니라 한도와 내용의 범위를 모두 개방해 전도유망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제한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영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사업영역에 맞는 지원방식을 개발해나가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이 향후 심도 깊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들의 응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개선방향, 지원요구 등을 조사할 경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박선화, “대안적 기업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사회적 기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자료집, pp.30-42, 2009.
 [2] 심창학, “사회적기업의 개념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2009.
 [3] C. Borzaga and J. Defourny,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2001.

[4] C. Borzaga and J. Defourny, “Conclusion : social enterprise in Europe : a diversity of initiatives and prospects,” C. Borzaga, J. Defourny,(ed.),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p.350-370, 2001.
 [5] C. Borzaga and A. Santauari, “Italy : from traditional co-operatives to innovative social enterprise,” C. Borzaga, J. Defourny(ed.),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p.166-181, 2001.
 [6] Cabinet Office,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HMGovernment, 2006.
 [7] J. Defourny, “Introduction :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Borzaga, C., Defourny, J.(ed.),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p.1-28, 2001.
 [8] Kim Alter,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2004.
 [9] J. L. Laville, “Social enterprises developing ‘proximity services,” C. Borzaga, J. Defourny, (ed.),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p.100-119, 2001.
 [10] OECD, *Social Enterprise*, Paris, OECD, 1999.

저 자 소 개

이 용 재(Yong-Jae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보장,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